

성명서

KT노동조합 제11대 각급 조직대표자 선출을 위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KT노동조합 위원장의 조합원 총회 소집공고에 따라 선거업무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금번 선거는 조합원의 중요한 행사로서 과거 KT노동조합 선거에서 되풀이 되었던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및 흑색선전을 근절하여 조합원에게 축제의 한마당이 되도록 역대 그 어느 선거 때보다 공명정대하고 자유로운 선거가 진행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일 본 선거가 진행되는 도중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2011년 11월 28일자 가처분 결정으로 선거관리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입후보자 등록절차 공고” 누락으로 제11대 KT노동조합 각급 조직 대표자의 선거업무가 다음과 같이 중지 되었음을 조합원 여러분께 공지합니다.

1. 공지사항 : KT노동조합 제11대 각급 조직대표자 선거 중지
(선거중지일 : 2011.11.29)
2. 중지사유: 선거관리규정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입후보 등록절차 공고 등)에 의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회개최 공고(2011.11.14 KT노동조합 위원장 조합원 총회 소집공고)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관한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 중 위원장 및 일부 지방본부위원장 입후보자 등록공고를 실기(失期)하였음.

조합원 여러분께 일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입후보자 등록공고 실기(失期)로 본 선거가 중지된 것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성명서를 통해 깊은 사과와 말씀을 드립니다.

2011.11.29

KT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